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2가단16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7. 7.

판 결 선 고 2022. 8. 25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,190,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1. 14.부터 소장부분
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다툼 없는 전제사실

○ 원고와 피고 B은 2015. 12. 4.부터 2016. 1. 13.까지 주점 영업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동업한 뒤 2016. 1. 15. 원고가 피고 B에게 동업파기에 따른 정산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2016. 2. 20.까지 지급하고, 피고 B은 그와 동시에 피고 C 명의의 허가 등을 원고가 요구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.

○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(당원 2016가합1765)를 제기하여 2016. 12. 29. ‘원고는 피고 B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, 그중 2억 9000만 원은 피고 C 명의 수협 계좌에서 인출지급하고,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, 그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(제1항),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,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(제8항).’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.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 동업기간 동안 피고들이 가져간 매출액 145,190,300원이 누락된 채 정산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바, 피고 B에 대한 소는 조정조서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갑 2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원도 없어 보이므로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우철